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 7. 15 선고 2020가합77 판결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재판경과

수원고등법원 2021. 12. 3 선고 2021나20176 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 7. 15 선고 2020가합77 판결

전 문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진 담당변호사 함영주

피 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박윤정

변 론 종 결 2021. 4. 15.

판 결 선 고 2021. 7. 1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위적 및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723,092,91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2.경 인쇄회로기판 제조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발행주식 총수는 5,000주이고, 자본금 총액은 2,500만 원이다. 원고의 설립 당시 피고는 원고의 유일한 사내이사로, 피고의 처 C는 감사로 각 등기되어 있었고, 원고 주주명부에는 피고가 발행주식 5,000주 전부의 주주로 기재되어 있었다.

나. 피고는 2014. 2.경부터 2019. 10.경까지 원고로부터 급여 명목으로 721,187,710원을 지급받았고, 2019. 7.경 원고의 법인카드를 사용하여 원고로 하여금 1,905,200원을 지출하게 하였다.

다. 이후 피고와 C는 2019. 11.경 사내이사 및 감사직에서 사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주위적 청구원인

피고는 실제 원고의 대표로 근무한 사실이 없고, 단지 피고의 처남인 D의 지시에 따라 원고의 대표로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임에도 2014. 2.경부터 2019. 10.경까지 원고로부터 대표 급여 명목으로 721,187,710원을 지급받았고, 원고로 하여금 피고가 업무상 또는 개인용으로 사용한 원고의 법인카드 대금 1,905,200원을 대신 납부하게 함으로써 법률상 원인 없이 위 금액 상당의 이익을

얻었으므로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반환으로 723,092,910원(= 721,187,710원 + 1,905,2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예비적 청구원인

피고는 D과 공모하여 위 돈 상당액을 횡령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으로 위 723,092,91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한 판단(주위적 청구원인)

1) 민법 제741조는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고, 당사자 일방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일정한 급부를 한 다음 그 급부가 법률상 원인 없음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하는 이른바 급부부당이득의 경우에는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부당이득반환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다. 이 경우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자는 급부행위의 원인이 된 사실의 존재와 함께 그 사유가 무효, 취소, 해제 등으로 소멸되어 법률상 원인이 없게 되었음을 주장·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7다37324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갑 제10, 11, 22호증, 을 제7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피고의 처남인 D이 원고를 실질적으로 설립 및 운영하였고, 피고가 원고의 의사결정과정 등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원고의 대표자인 유일한 사내이사로서 원고의 업무를 일부나마 수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원고의 관리부 차장으로 근무하였던 E이 원고의 업무처리 시 피고로부터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를 받아오거나 피고의 자필서명을 받아왔음을 원고 또한 인정하고 있다.

㉡ 회사의 대표는 대외적으로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회사의 대표권을 당연히 가지는 반면, 그에 따른 법적 책임도 부담하게 되는바, 대표자로 등기되어 있던 피고가 명목상의 대표라고 하더라도

피고에게 급여를 지급하기로 하는 원고의 의사결정이 있었던 이상 피고의 급여청구권은 당연히 인정된다. 원고의 주주 구성 등을 고려할 때 피고에게 급여를 지급하기로 하는 원고의 의사결정 및 집행과정에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볼 만한 사정 또한 드러나지 아니하였다. 피고가 원고의 법인카드로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 1,905,200원 부분 또한 이와 동일하게 원고 내부 절차에 따라 인정된 범위 내에서 지출되었다고 볼 수 있다.

㉔ 피고와 피고의 처 C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2019. 11.경 원고의 사내이사 및 감사직에서 사임하였고, F과 그의 남편인 G은 2019. 11. 21. 원고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로 취임하였으며, 원고의 주주 명의로 그 무렵 F 및 G 측으로 변경된 것으로 보이는데, 그 무렵인 2019. 11. 16. 피고와 F, G을 포함한 관련자들 사이에 작성된 합의서(갑 제10호증) 제9항에는 “(주)A의 영업비 4억 원에 대하여는 인정한다. 대표이사 B 및 감사 C의 주식은 합의내용 2항을 바탕으로 F과 H, I의 명의로 명의신탁 인정 및 서류 작성을 포함한 모든 이행이 완료되었을 경우 퇴직금을 1억 원 내에서 인정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그 문언만 살펴보더라도 피고 및 피고의 처 C의 원고에 대한 퇴직금청구권을 인정한다는 취지이고, 이는 피고와 피고의 처 C가 원고의 등기임원으로서 적법하게 재직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이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가 원고의 대표자 사내이사로서 재직하는 기간 동안 원고로부터 급여를 송금받기로 하는 합의가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예비적 청구원인)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피고 사이에 급여지급 등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그에 따라 피고에게 급여 명목의 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의 돈을 횡령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이 부분 청구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박상언, 판사 이승민, 판사 손고은